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3. 17 선고 2021가단21229 판결 [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17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. 9. 1. 선고 2005가합3398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임대호

청 구 원 인

1. 원고 A 는 피고 B 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가합 3398호 공사대금및손해배상 청구사건에 '피고는 원고에게 249,186,9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. 7. 18.부터 완제일까지 연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'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2005. 10. 22. 확정되었습니다.
2. 그러나 피고가 오랫동안 위 판결의 주문에 따른 지급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타채 111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.
3. 따라서 원고는 위 집행권원의 시효를 중단하여 피고로부터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